

4.3.24 책임강의학점및강의비지급규정

제정	2012. 03. 16.	개정	2021. 11. 29.
개정	2012. 05. 23.	개정	2022. 04. 04.
개정	2014. 11. 03.	개정	2022. 06. 09.
개정	2015. 07. 31.	개정	2022. 10. 04.
개정	2016. 01. 20.	개정	2022. 12. 07.
개정	2016. 06. 23.	개정	2023. 02. 02.
개정	2016. 09. 22.	개정	2023. 06. 28.
개정	2017. 02. 22.	개정	2023. 08. 07.
개정	2018. 01. 25.		
개정	2018. 03. 14.		
개정	2019. 02. 01.		
개정	2019. 08. 29.		
개정	2020. 11. 26.		
개정	2021. 02. 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 책임강의학점 및 강의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적용대상과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전임교원, 강의담당 직원, 비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06.23., 2018.01.25. 2019.08.29., 2023.06.28.>

② 이 규정은 대학(학부) 및 대학원에서 매 학기 개설되는 모든 강의와 별도반으로 운영되는 시간제 등록제 강의(이하 시간제 강의)에 적용하며, 정규학기 학점으로 대체 인정을 받는 항공기술교육원 강의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09.22., 2021.11.29.>

③ 계약학과는 학사과정과 대학원 과정에 설치된 계약학과를 모두 포함한다. <신설 2018.01.25>

제3조(강의의 구분) ① 강의는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이론강의는 이론시간만으로 구성된 과목의 강의를 말한다.
2. 실습강의는 실험·실습·실기로만 구성된 과목의 강의를 말한다.
3. 이론·실습병행강의는 이론시간과 실험·실습·실기시간으로 혼합 구성된 강의를 말한다.
4. 현장실습강의는 일정기간 현장에서 실습하는 과목의 강의를 말한다.
5. 병원임상실습강의는 일정기간 병원에서 실습하는 과목의 강의를 말한다.

② 강의는 담당 교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08.29>

1. 초과강의는 전임교원이 책임강의학점을 초과하여 담당한 강의를 말한다. <개정 2019.08.29>
2. 시간강의는 책임강의학점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비전임교원이 시간제로 담당하는 강의를 말한다. <개정 2019.02.01>
3. 삭제 <2023.06.28.>
4. 특별강의는 특별히 초빙된 국내·외의 저명인사에 의한 강의를 말한다. <호 이동 2016.01.20.>

제4조(책임강의학점) ① 전임교원의 책임강의학점은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기당 12학점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01.20.>

② 학부 및 대학원(계약학과 포함), 항공기술교육원 강의 학점 모두를 책임강의학점으로 인정하며, 그 외 강의 활동 중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책임강의학점으로 인정하되 강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06.23., 2018.01.25., 2019.02.01., 2021.11.29., 2022.04.04.>

③ 삭제 <2019.02.01>

- ④ 보직교원의 학기당 책임강의학점은 별표1에 의한다.
- ⑤ 기타교원의 책임강의학점은 별도의 위촉규정 및 계약에 따른다.
- ⑥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 경중에 따라 책임강의학점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⑦ 온라인 수업에 대한 책임강의학점은 학기당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한다. <신설 2019.02.01.><개정 2023.06.28.>
- ⑧ 타 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경우 해당 학점은 책임강의학점으로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강의비는 재정지원사업비 또는 교비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0.04.><개정 2023.06.28.>
- ⑨ 팀티칭(team teaching) 수업 및 옴니버스(omnibus) 수업의 경우 담당 과목의 시간비율을 책임강의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07.>

제5조(강의비 지급기준금액) ① 시간강의비 및 초과강의비는 “강의로 산정 및 급여지급 내규” 별표1에 따른다. <개정 2016.01.20., 2019.08.29>

- ②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 기준액을 증액할 수 있다.
 1. 외국인, 명예교수 및 국내 저명인사의 시간강의비
 2. 강의를 위하여 숙박을 요하는 경우의 시간강의비

제6조(강의비 지급) ① 초과강의비 및 시간강의비에 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강의비를 지급한다. 단, 수업시간에 준하는 담당교원의 지도활동이 없는 학생 개인의 현장체험(학습)이나 실습, 사회봉사, 인턴십을 하고 학점을 받는 과목이나 논문지도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의 초과강의학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학점만큼 초과강의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개정 2019.02.01., 2023.06.28.>

1. 초과강의비는 책임강의학점을 초과한 학점에 대하여 지급하며,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개정 2019.02.01.>
 - 가. 초과강의비는 전임교원이 담당한 학사과정, 대학원과정, 주말반, 항공기술교육원 교육과정의 학점 순으로 계상한 다음 초과한 학점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8.01.25., 2019.02.01., 2021.11.29., 2023.06.28.>
 - 나. 삭제 <2023.06.28.>
 - 다. 삭제 <2023.06.28.>
 - 라. <별표 1>의 책임강의학점이 6학점 이하인 보직자의 책임강의학점 초과여부는 6학점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6.06.23.>
 - 마. 제4조(책임강의학점) 제7항의 6학점을 초과하여 담당한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는 초과강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9.02.01.><개정 2023.06.28.>
 - 바. 초과강의비는 수강인원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여 산정하고 <별표 3>에 따라 적용한다. <신설 2023.06.28.>
2. 비전임교원의 시간강의비는 제7조(시간강의비 산출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단, 본교 교육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계약학과 강의에 대하여 소정의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03., 2016.09.22., 2018.01.25., 2023.06.28.>
3. 삭제 <2023.06.28.>
4. 삭제 <2017.02.22.>

5. 동일한 원격교육콘텐츠를 활용하여 온라인 수업을 분반하여 운영할 경우 전임교원의 책임강의학점을 초과하는 온라인 수업 학점 또는 강사 및 비전임교원의 강의시수에 대하여 일반 강좌, 온라인 수업 순으로 합산하여 첫 번째 분반의 경우 학점 또는 시수에 해당하는 100% 금액을 지급하고, 2번째 분반부터는 50% 이내의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1.26.><개정 2023.06.28.>

② 현장실습학기제 형태로 운영되는 실습강의는 제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의 학부 강의, 3명 미만인 대학원 강의로 발생한 초과학점은 강좌당 1학점을 감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3.06.28., 2023.08.07.>

1. 삭제 <2019.02.01>

2. 삭제 <2019.02.01>

3. 삭제 <2023.06.28.>

4. 삭제 <2023.06.28.>

5. 삭제 <2023.06.28.>

6. 삭제 <2023.06.28.>

③ 정규시험시간, 휴강 또는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교가 임시휴업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강의를 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22.06.09.>

제7조(시간강의비 산출기준) ① 시간강의비는 주당 담당시수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07.31., 2016.06.23., 2023.08.07.>

~~1. 삭제 <2023.08.07.>~~

~~2. 삭제 <2023.08.07.>~~

3. 삭제 <2016.06.23.>

~~4. 삭제 <2023.08.07.>~~

5. 삭제 <2023.06.28.>

6. 삭제 <2022.06.09.>

② 직원이 담당하는 교과목의 시간강의비는 전임교원의 초과강의비를 적용한다. <신설 2016.06.23.> <개정 2019.08.29>

③ 팀티칭(team teaching) 수업 및 옴니버스(omnibus) 수업의 경우 과목의 시간비율을 환산하여 강의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2.12.07.>

제8조 삭제 <2019.08.29>

제9조(강의비 지급기일) 강의비는 주당 시수를 기준으로 하여 4주 단위로 지급하되 학기 마지막 지급분은 3주 단위로 하며, 집중이수제 등 수업기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 단위로 지급한다. <개정 2016.06.23., 2018.03.14., 2019.02.01., 2022.06.09.>

제10조(타 대학 출강 제한)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이 타 대학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당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책임강의학점 미달 시 조치) ① 정당한 사유없이 책임강의학점에 미달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신설 2015.07.31.> <개정 2019.02.01>

1. 미달 1학점 당 월 급여(호봉액 기준)의 1/20을 해당 학기동안(방학기간 포함) 매월 삭감 할 수 있다. <개정

2019.02.01>

2. 미달 학점 수가 책임강의학점의 1/2 이상인 경우, 교무처장은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6.01.20.>

3. 책임강의학점이 미달된 전임교원의 경우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미달 학점을 다음 학기에 충당하여야 하고, 해당 학기에 초과강의학점이 발생하더라도 미달된 학점만큼 초과강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8.03.14.>

②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학기 책임강의학점 6학점 이하 보직자와 정년퇴직 직전학기에 해당하는 교원의 경우 예외로 한다. <신설 2019.02.01>

제12조(강의비 환수) 담당과목에 대한 강의 또는 보강을 미이행 시 해당 학점(시수)에 대하여 교원 신분에 따른 초과 강의비 또는 시간강의비를 환수하도록 한다. <신설 2018.03.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제4조제1항의 1호는 201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규정폐지) 기존 교원담당시수 및 강사료 지급규정은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시기) 제6조 제1항 제5호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강의비지급)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 후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0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직교수의 책임강의학점<개정 2014.11.03, 2015.07.31, 2016.01.20., 2016.06.23., 2021.02.16. 2022.06.09. 2023.02.02.>

보 직 명	책임강의학점
부총장, 학장, 대학원장, 처·실장, 산학협력단장, 국제교류교육원장, 정보전산원장, 비행교육원장, 학생성공진흥원장, 재정지원사업단장	6학점 이하
도서관장, 생활관장, 평생교육원장, 센터장, 학(부)과장, 실습과장, 대학원주임교수, 예비군중(대)대장, 항공안전보안실장, 초당항공기술교육원장, 초당드론교육원장, 부학과장, 재정지원사업부단장	9학점
부(팀)장, 행정업무담당교원	10학점

<별표 2> 전임교원 초과강의비 <신설 2023.06.28.>

(단위: 원)

구 분	전임교원		
	주간	야간	주말반
금액	20,000	25,000	25,000

<별표 3> 수강인원에 대한 강의비 <신설 2023.06.28.>

(단위: 원)

구 분	금 액
기본 강의(80명 이하)	20,000
중형 강의(81명 이상 ~ 100명 이하)	25,000
대형 강의(101명 이상)	30,000